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06 발의연월일: 2024. 12. 19.

발 의 자:이해민·김준형·차규근

황운하 · 강경숙 · 민병덕

김우영 · 김선민 · 김재원

백선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이하'예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도 예타 대상에 포함됨.

그러나 현재 예타를 통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진행은 기획부터 착수까지 평균 3년이 소요되는 등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통과율도 20%에 불과함. 이는 기술 발전의 적시성을 저해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패권 시대에 '초격차' 확보와 '승자독식' 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기술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38조제 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67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4에 따른 "구축형연구개발사업" 중 연구개발과 기능상 일체로서 별도 추진이 곤란한 건축사업은 제외한다.

제38조의3을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재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	
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	
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	
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	
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	
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다
	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2
	조의4에 따른 "구축형연구개
	발사업"중 연구개발과 기능
	상 일체로서 별도 추진이 곤
	란한 건축사업은 제외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u><삭 제></u>
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생략)

② ~ ⑥ (생 략)

제38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 비타당성조사의 특례) ① 기획 재정부장관은 제8조의2,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규정된 사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해서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 사에 관하여 위탁받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은 제38조제2항 및 제6항과 관련한 사항의 경우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3.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삭 제>